### 중국 진출 법률가이드-①

# 현지법인 설립 관련 법률제도 및 유의점

2014년11월5일







### 1. 현지법인의 종류



- 중외합자경영기업(中外合資經營企業)
- 외국의 기업과 기타 경제조직 혹은 자연인이 중국의 기업 혹은 기타 경제조직과 함께 중국 내에서 공동으로 투자하여 설립한 유한회사형태의 기업임.
- 각 출자인이 공동으로 투자하고 공동으로 경영하며 각자의 <u>출자비율에 따라서 이익을</u>
   <u>배분하고 리스크를 분담함</u>.
- 일반적인 정황하에서 중국적 자연인은 합자기업의 출자인으로 될수 없음. 외국측 출자인이 합자기업에서 차지하는 지분비율은 25%이상이어야 함.
- 중외합작경영기업(中外合作經營企業)
- 1980년대에 중국정부가 화교계 자본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독창적으로 만들어 낸 투자형태임.
- 기업의 경영권 지배, 이익 배분, 리스크 분담, 잔여재산 회수 등 사항을 출자비율이 아닌
   출자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약정하게 됨.
- ▶ 법인형식을 채용할 수도 있고 비 법인형식을 채용할 수도 있으나, 그 운영구조, 책임부 담 등에 불명확한 점이 너무 많기에 현재는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음.

## 1. 현지법인의 종류



#### 외자기업(外資企業)

- 》 외상독자기업(外商獨資企業)이라고도 부르며, 모든 자본이 외국의 기업, 기타경제조직 혹은 자연인의 투자로 설립된 유한회사형태의 기업임.
- 외상투자기업 중 그 <u>지분관계가 가장 명쾌</u>하고, 외국 출자인의 의사대로 <u>자유롭게 경영</u>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.
- 단, 합자기업이나 합작기업의 경우처럼 중국측 출자인의 협력을 받을 수 없기에 정부부서와의 의사소통, 인맥구축 등 면에서는 일정한 애로가 있다는 단점도 존재함.

#### ■ 외상투자기업 설립현황

- ▶ 실무상에서는 합자회사와 독자회사의 형태를 이용하는 경우가 절대 다수임.
- ▶ 1980년대에 외국기업의 중국진출은 약 80%가 합자기업의 형태를 채용하였으나 합자 기업의 경우에는 중국측 출자인과 분쟁이 다발하는 면도 있고, 중국의 WTO가맹과 더불 어 시장개방과 투자환경 개선이 이루어졌기에 외국기업의 중국진출형태도 합자기업으 로부터 독자기업으로 이행하는 경향이 가속화 되고 있음. 현재 중국 내에 설립된 외상투 자기업 총 수량에서 차지하고 있는 합자기업의 비율은 약 30%에 불과함.
- 한국과 중국의 기업경영인들은 성격, 관리이념,가치관 등 면에서 큰 차이가 있기에, 중국 법률상에서 외상독자기업형태로서의 진출이 금지되어 있는 업종 혹은 한국측 출자인의 능력만으로서는 사업전개가 도저히 무리한 경우를 제외하고 <u>현지법인은 외상독자기업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원칙</u>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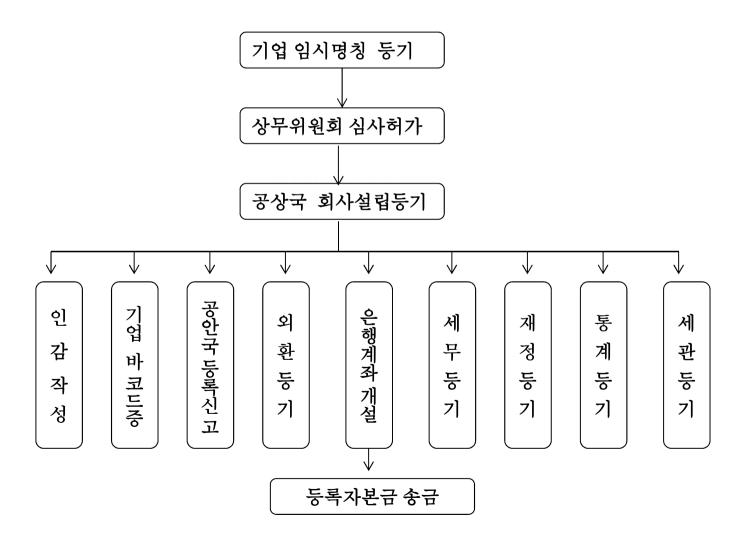
## 2. 진출업종에 따른 차별적 대우



- 중국에는 외국자본유치에 관한 일반적인 지침으로서 업종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<<u><외상</u>
  <u>투자방향 지도규정>(투자 가이드라인) 및 <외상투자산업 가이드 목록></u>이라고 하는 투자 업종별로의 구체적인 규정이 있음.
- ▶ 투자 가이드라인에 규정된 업종은 <u>장려유형, 허가유형,제한유형 및 금지유형</u>등 4가지로 분류되어 있고, 이러한 분류에 의해 각 업종에서의 외상투자기업의 설립 난이도나 조건, 경제상에서의 우대정책 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음.
- > <u>장려유형</u>은 세무 등 면에서 혜택을 받는 외에, 외국측 출자인의 출자비율에 대한 제한도 적고, 설립절차의 심사,허가에 있어서 정부의 태도도 비교적 완화된 편임.
- 반대로 <u>제한유형에 있어서는 외국측 출자인의 출자비율, 출자인의 자격 등 사항이 특별</u> 법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가 비교적 많고, 설립절차에 있어서도 정부의 엄격한 심사·허가 를 받아야 함.
- *금지유형*은 말그대로 외국자본의 유입을 금지하는 업종임.
- 허가유형은 장려유형과 제한유형의 중간상태에 있는 업종이라고 이해할 수 있음. 즉 허가유형은 중국정부가 외국자본의 유입을 환영도 안하고 반대도 안하는 업종.



### 1) 설립절차





### 1) 설립절차

- 현지법인은 공상국에서의 회사설립등기를 완료하고 영업허가증(즉 사업자등록증)을 취득한 날로부터 법률상에서 법인격을 부여받게 됨.
- 지역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, 북경의 경우 현지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기간은 매우 순조로울 경우 약 2개월이나 약 3개월로 계획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현실적임.
- 현지법인의 사업범위 내에 특별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이 포함된 경우에는 상무위원회의 심사허가를 받기 전에 관할부서에 신청하여 특별허가를 받아야 함(前置審批).
- 예컨데, 현지법인이 외식업에 종사할 경우에는 식품약품감독부서에 신청하여
   <외식서비스허가증>을 취득하여야 하고, 현지법인이 제3류 의료설비 판매업에 종사할 경우에는 식품약품감독부서에 신청하여
   <의료기계경영허가증>을 취득하여야함.



### 2) 필요한 신청서류

- ▶ 상무위원회에 제출하는 서류
- ① 승낙서
- ② 위임장 및 대행인의 신분증명서 복사본
- ③ 사업계획서
- ④ 출자인의 등기부등본 (자연인일 경우에는 여권 복사본)
- ⑤ 법인대표 유효증명서류 (자연인일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음)
- ⑥ 은행잔고증명서
- ① 사무실임대계약서 및 부동산권리증서 복사본
- ⑧ 임시명칭등기 통지서
- ⑨ 동사회구성원 리스트, 동사 임명장 및 각 동사의 여권 복사본
- ⑩ 정관 및/혹은 합자계약서
- ⑪ 외상투자기업 설립 행정허가 신청서
- ⑫ 상무위원회가 요구하는 기타 서류



### 2) 필요한 신청서류

- ▶ 공상국에 제출하는 서류
- ① 외상투자기업 설립 신청서 (기업설립등기 신청표, 출자인의 명부, 법인대표 등기표, 동사회구성원, 총경리, 감사의 임명장, 기업주소지 증명 등 서류가 포함됨)
- ② 정관 및/혹은 합자계약서
- ③ 상무위원회의 외상투자기업 심사허가증서
- ④ 출자인의 등기부등본 (자연인일 경우에는 여권 복사본)
- ⑤ 임시명칭등기
- ⑥ 공상등기 업무의 대행에 관한 위임장
- ① 기업비서(연락담당) 등기표
- ⑧ 법률문서송달 수권위탁서
- ⑨ 공상국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

### 4. 현지법인의 출자형식



- 외상투자기업의 출자는 일반적인 경우 <u>현금출자</u>형식이 많이 이용되고 있으나 현물,지식재산권,토지사용권 등 화폐로 평가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법률 상에서 양도 가능한 <u>비화폐재산</u>으로도 출자할 수 있음.
- 단, 법률상 출자금지된 비화폐재산은 가령 평가 가능하고 양도 가능하다고 해도 이를 출자로 사용할 수 없음. 예컨데, 용역, 신용, 성명, 상업적 명예, 특수경영권,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 등.
- ▶ 비화폐재산으로 출자할 경우에는 상응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 중국 내의 자산 평가기구에 의뢰하여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음. 단, 자산평가기구가 부동함으로 인해 그 평가 결과에도 큰 차이가 있기에 합자기업형태의 현지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중국측 출자인이 비화폐재산으로 출자할 경우에는 중국측 출자인이 일방적으로 선임한 자산평가기구에 평가업무를 의뢰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피면해야 함.

### 5. 등록자본금과 투자총액



- "등록자본금"이란 외상투자기업 설립시, 공상행정관리국(공상국)에 등록된 자본금의 총액으로서 각 출자인이 외상투자기업에 납부할 것을 약정한 출자금액의 합계임.
- "투자총액"이란 외상투자기업의 경영규모에 비추어 투자할 필요가 있는 기본 건설자금 및 운영자금의 총액을 말함.
- ▶ 외상투자기업의 등록자본금과 차입금의 합은 투자총액을 구성함. 즉 *외상투자* 기업의 차입한도금액은 투자총액과 등록자본금의 차액이라고 볼 수 있음.
- 외상투자기업의 차입금액을 제한하는 조치로서 중국정부는 등록자본금과 투자총액의 비율을 규정하고 있음.
- 총체적으로 보면 투자총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등록자본금이 투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고,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4가지 경우로 구분되어 있음.

### 5. 등록자본금과 투자총액



- 투자총액이 300만달러 이하(300만달러 포함)의 경우, 등록자본금은 적어도 투자총액의 *7/10 이상*을 차지하여야 함.
- 투자총액이 300만달러 이상 1,000만달러 이하(1,000만달러 포함)의 경우, 등록자본금은 적어도 투자총액의 *1/2 이상*을 차지하여야 함. 단, 투자총액이 420만달러 이하의 경우, 등록자본금은 적어도 210만달러이어야 함.
- 투자총액이 1,000만달러 이상 3,000만달러 이하(3,000만달러 포함)의 경우, 등록자본금은 적어도 투자총액의 *2/5 이상*을 차지하여야 함. 단, 투자총액이 1,250만달러 이하의 경우, 등록자본금은 적어도 500만달러이어야 함.
- 투자총액이 3,000만달러 이상의 경우, 등록자본금은 적어도 투자총액의 <u>1/3</u> <u>이상</u>을 차지하여야 함. 단, 투자총액이 3,600만달러 이하의 경우, 등록자본금 은 적어도1,200만달러이어야 함.

### 5. 등록자본금과 투자총액



- 원 회사법의 규정에 의하면, 외상투자기업의 등록자본금의 최소금액은 그 형태가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<u>RMB 3만원</u>(출자인이 1인일 경우에는 <u>RMB10만원</u>)이고,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<u>RMB 3,000만원</u>임. 단, 2014년 회사법 개정에 있어서 위 규정은 폐지됨.
- 특별법에 등록자본금의 최소금액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따라야함.
- ▶ 심사허가부서(상무위원회)는 외상투자기업의 사업규모 등 요소를 고려하여 그 등록자본금의 금액이 안정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타당한 금액인지 여부를 판단하기때문에 <u>등록자본금은 경영상의 실제 수요보다는 다소 많이 설정하는</u> <u>것이 무난한 선택임</u>.
- 세무부서는 외상투자기업의 규모에 근거해 납세자의 종류, 영수증 발행 한도 액 등을 판단하고 있으며, 등록자본금은 기업규모의 판단에 있어서 매우 중요 한 기준의 하나로 되고있음. 따라서, 등록자본금의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외상투자기업 설립 후의 세무 혹은 상업신용상의 사정도 고려의 범위에 넣는 것이 타당함.

## 6. 등록자본금의 납부



- 외상투자기업의 등록자본금은 <u>일괄 납부</u>할 수도 있고 <u>분할 납부</u>할 수도 있음.
- ▶ 일괄 납부의 경우에는 외상투자기업 설립일(사업자등록증 발급일)로부터 6개 월 내에 등록자본금을 전액 납부하여야 함.
- 분할 납부의 경우에는 외상투자기업 설립일로부터 <u>3개월 내</u>에 첫번째 출자금을 을 납부하고 또한 설립일로부터 <u>2년 내</u>에 나머지 출자금을 전부 납부하여야 함.
- 분할 납부에 있어서 첫번째로 납부하는 출자금은 등록자본금의 15% 이상이어 야 하며, 법에 규정된 등록자본금 최소금액을 하회해서는 아니됨.
- 외상투자기업이 그 업종, 사업계획 등 원인으로 인해 설립 당초의 생산,경영은 등록자본금의 일부분만으로도 충분히 대응 가능할 경우에는 상기 등록자본금 분할 납부제도를 이용함으로서 자금 사용효율을 제고할 수 있음.

### 7. 출자인의 책임한도



- ▶ 외상투자기업의 출자인은 자신이 인수한 출자금액을 한도로 외상투자기업의 채무에 대해 책임점. 예컨데, 모 합자기업의 등록자본금이 100만달러이고, 그중 한국출자인이 인수한 출자금액이 70만달러인 경우, 동 합자기업이 장래에 200만달러의 채무가 발생하였다 해도 합자기업에 대한 한국출자인의 책임은 70만달러를 한도로하며, 이를 초과한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질 필요가 없음.
- 단, 출자인이 외상투자기업의 법인성에 의한 독립적인 지위 및 출자인의 유한책임제도를 남용하여 채무를 도피하고 채권자의 이익에 현저한 손해를 주었을 경우에는, <<u>법인</u> 격부인론>이 도입되어 출자인이 외상투자기업의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도 존재함.
- 예컨데, 독자기업에 있어서 출자인이 주주가 단 1인이라는 유리한 조건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독자기업의 자산을 전부 자신의 명의하에 이전하여 독자기업을 형해화 함으로서 채무를 도피하였을 경우, 독자기업의 채권자는 출자인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추궁할 권리가 있음. 단, 실무상에서 <법인격 부인론>이 적용되어 출자인이 연대책임을 추궁받은 사례는 극히 적음.

## 8. 합자계약의 내용



- 합자계약은 합자기업을 설립함에 있어서 중국측 출자인과 외국측 출자인이 합자기업의 설립, 출자, 경영, 청산, 분쟁해결 등 사항에 관한 상호간의 권리,의무를 규정한 계약서로서 합자기업의 존속기간 중 가장 중요한 법률서류임.
- 합자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함.
- 각 출자인의 명칭, 소재국, 주소지 및 법인대표의 성명, 직무, 국적
- ▶ 합자기업의 명칭,주소지,목적,경영범위 및 규모
- 합자기업의 투자총액, 등록자본금, 각 출자인의 출차액, 출자비율, 출자방식, 출자납부일 및 출자 미납부의 경우와 지분양도에 관한 규정
- 각 출자인의 이익분배 및 손실부담의 비율
- › <u>합자기업 동사회의 구성, 동사의 인원 배분, 총경리, 부총경리 및 기타 고급관리인원의</u> <u>직책,권한 및 초빙방법</u>
- 도입하는 주요한 생산설비,생산기술 및 구매처
- ▶ 원자재의 구입 및 제품의 판매방법

## 8. 합자계약의 내용



- 재무,경리, 회계감사의 처리원칙
- ▶ 노무관리,급여,복지,노동보험 등 사항에 관한 규정
- ▶ 합자기업 존속기간, 해산 및 청산 절차
- ▶ 계약위반 책임
- ▶ 각 출자인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 및 절차
- » 계약서에 사용되는 *문자의 종류* 및 계약효력 발생 조건

#### ■ 용어해석

"동사회"는 합자기업의 최고권력기구로서 이사회의 권한과 주주총회의 일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서임.

*"동사"*는 이사에 상당한 직위임.

*"총경리"*는 총지배인을 말함.

## 9. 합자계약의 유의점



### ■ 준거법

- <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>의 규정에 의하면 합자계약의 체결,효력,해석,이행 및 그 분쟁 해결은 모두 중국법을 준거법으로 하여야 함.
- 실무상, 합자계약서 작성에 있어서 한국측 출자인은 장래에 중국측 출자인과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대비하여 자신의 이익을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강력히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주장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존재하지만, 가령 중국측 출자인이 이에 동의하고합자계약서에 관련조항을 설치하였다고 해도 실상 아무런 가치도 없음.
- 왜냐하면 이러한 약정은 합자계약 <u>준거법에 관한 중국법의 강제규정을 위반하였기에 무</u> 효로 인정되기 때문임.

### 9. 합자계약의 유의점



### ■ 분쟁해결

- 합자계약 실무상, 한국측 출자인은 분쟁해결 절차에 있어서 중국측 출자인에 비해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관할법원을 서울지방법원 등 한국법원으로 지정하는 사례가 많지만 <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>의 규정에 의하면 중국 경내에서 이행되는 할자계약 관련 소송은 중국법원이 관할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.
- 즉, 합자계약에 서울지방법원을 전속관할법원으로 규정했다 해도 중국측 출자인은
   중국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.
- 단, 중국과 한국은 상대국의 사법판결을 승인하지도 않고 집행하여 주지도 않음.
- 한국과 중국은 모두 < 21로 조재판단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>(뉴욕협약)의 가맹국이기에 상대국의 중재기구에서 내린 중재판단은 승인하고 집행하여 주고 있음.
- 한국측 출자인이 중국 법원 혹은 중재기구에 의한 분쟁해결을 피면하려고 할 경우에는
   한국 서울에 소재하여 있는 대한상사중재원을 관할 중재기구로 지정할 수 있음.

## 9. 합자계약의 유의점



### ■ 효력발생

- 일반계약서는 당사자가 서명, 날인함과 동시에 즉시 효력을 발생하지만, 합자계약은 이와 달리 당사자의 서명, 날일만으로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고 <u>심사허가부서의 승인을 받</u>
   **야야 만 효력을 발생**하며, 계약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임.
- 단, 합자계약 체결 후, 각 출자인이 합자계약 관련사항에 대해 보충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보충계약이 원 합자계약 내용의 중대한 수정이나 실질적인 변경을 초래 하지 않는 한, 당해 보충계약은 심사허가부서의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해도 출자인 간의 서명,날인만으로 효력을 발생하게 됨.
- 여기에서 일컫는 < 중대한 수정이나 실질적인 변경>이라 함은 등록자본금, 회사유형, 경 영범위, 경영기간, 출자인이 인수한 출자액, 출자방식의 변경, 합병, 분할, 지분양도 등 사항이 포함됨.

## 10. 부동한 인허가 기준



■ 중국 진출관련 투자정책은 지역에 따라 다른 경우가 많고, 같은 지역이라도 부동한 행정구역에 의해 다른 경우가 있음.

### ■ 사례:

- ▶ 상호를 중문 숫자로 표기할 경우, 북경에서는 순조롭게 등록될 수 있지만 상해에서는 여러모로 애로가 존재 함.
- 중외합자경영기업법(2001년 개정시행) 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, 중국적 자연인은 합자기업의 출자인으로 될 수 없음. 단, <u>천진시, 중경시, 절강성,</u> <u>하남성,</u> <u>복건성</u> 등 지역의 지방정책으로는 가능함.
- ▶ 북경시에서 중외합자호텔관리회사를 설립할 경우, 동성구, 해전구 등 지역에서는 발전개혁위원회의 심사허가가 필요없지만, 조양구에서는 발전개혁위원회의 심사허가가 필요함.

## 10. 부동한 인허가 기준



### ■ 대응방안:

- ▶ "<u>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</u>"는 속담대로 집행하는 것이 중요함 .
- 사전 법률조사가 매우 중요하며,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정부담당자의 답변이 시원치 않거나 헷갈릴 경우에는 <u>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</u>할 필요도 있음.
- > 중국의 정책 및 법률제도 변화가 너무 빠르기때문에 과거의 인식이나 경험에만 멈춰있으면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점을 명기.
- 중국변호사가 작성한 법률의견서는 <u>법률상의 규정에 의한 검토의견</u>과 <u>실무상의 작법에</u>
   의한 검토의견 등 2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지는 경우가 많지만, 이는 중국사회의 독특한 풍경.

## 11. 사무실 임대 관련 유의점



현지법인 설립 혹은 경영기간 중에 사무실 임대 관련 문제가 다발하고
 있기에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아니됨.

### ■ 사례:

- ▶ 북경 왕징 소재 모 한국독자회사(J사)는 중국사업의 확장을 위해, 원래 있던 사무실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금방 준공된 고급빌딩 사무실 임대계약을 체결함.
- 계약체결 당시 사무실 부동산권리증서는 미발급 상태이나 부동산중개회사의 설명으로는 회사등록이 가능하다는 답복.
- ▶ 그후, J사가 관할 정부부서에 등록주소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거절됨. 거절원인은 이사하려는 사무실이 부동산권리증서가 없기때문임.
- ▶ 사무실 임대비용은 이미 6개월분 지불하였고, 원 사무실 부동산권리인도 등록주소 이전을 촉구하는 상황이기에 J사는 매우 난감한 처지.

## 11. 사무실 임대 관련 유의점



### ■ 대응방안:

- 임대계약 체결에 있어서, <u>먼저 부동산권리증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</u>.
   부동산중개회사나 건물주의 구두 약속은 신용하기 어려움.
- <u>부동산권리증서에 기재된 용도에 의해 회사주소로서의 등록가능 여부가 결정됨</u>. 예를 들면, 상업용, 거주용, 상주양용 등.
- 임대계약에 기재된 사무실 주소는 반드시 부동산권리증서에 기재된 주소와 <u>100%로</u> <u>일치</u>하여야 함.
- 예를 들면, 부동산권리증서에 기재된 주소는 "북경시 조양구 동삼환로 100호 A동 1008실"인데 임대계약서에 "북경시 조양구 동삼환로 100호 홍길동빌딩 A동 1008실"로 하면 등기 불가.
- 부동산권리증서가 있고, 또한 용도상 회사주소로서의 등록이 가능한 사무실이라 하더라도 그 주소에 말소되지 않은 다른 회사의 주소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.

### 12. 주재원 비자 관련 문제



 현재 중국정부는 외국인들에 대한 비자관리를 상당히 엄격히 실시하고 있기에 파견된 주재원이 중국법률 위반행위로 인하여 비자 갱신이 안되는 케이스가 다발하고 있음.

### ■ 사례:

- 북경소재 모 한국독자기업의 주재원 김씨는 2013년 2월의 어느날 북경시 조양구의 술집에서 새벽 3시까지 음주 후 가지고 온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, 앞에서 달리던 승용차와 접촉사고 발생함.
- > 경미한 사고였지만, 상대방 중국인 기사는 김씨가 외국인일 뿐만아니라 음주운전이라는 사실을 알고 RMB 5만원의 배상금을 요구하였고, 김씨는 거절함.
- 중국인 기사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,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당장에서 김씨를 구속.그 후 김씨는 2개월 구역형 판결을 받음.

## 12. 주재원 비자 관련 문제



- 2014년2월, 김씨는 북경시공안국 출입경관리처에 본인 및 가족들의 비자 갱신 신청을 제출하였으나 모두 거절 당함.
- ▶ 3일 후 김씨는 가족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감.
- > 중국에서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김씨의 인생은 크게 바뀌게 됨.

### ■ 대응방안:

- 중국의 국력강화, 외국인들의 중국법무시,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만 등 원인으로 인해 중국정부의 외국인들에 대한 초국민대우는 자취를 감추고 있음.
- 중국에 파견되는 주재원들을 상대로 중국법 준수 및 생활안전에 대한 교육을
   진행할 필요가 있음.